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강화〉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3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3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 2의2. (생략)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4. (생략)	----- -----
4.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¹⁾에 따른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양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21,000명이며,

< 정신건강전문요원 개요 및 현황 >

- (정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한 국가 공인 전문자격으로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직역 구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업무 범위) 공통과 개별 업무로 구분(현행법 시행령 별표2)
 - (공통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수행 및 교육 등
 - (개별 업무) 심리상담(임상심리사), 간호 활동(간호사),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사회복지사), 작업치료(작업치료사) 등
- (주요 활동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
- (양성 현황) 1997년 첫 배출 이후 누적 21,000명 양성(2025. 12. 기준)

(단위: 명, %, 2025. 12. 기준)

종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합계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인원	2,408	1,493	3,860	6,284	3,479	3,339	36	101	21,000
(비율)	3,901(18.6)		10,144(48.3)		6,818(32.5)		137(0.7)		

자료: 보건복지부(출처: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4, p.10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 ⑧ (생략)

현행법 제17조제8항2)에 따라 위임되어 시행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사유로 한 결격사유에 현행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시행령 [별표 2])

1. 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강전문요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법」, 「간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는 범죄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각각 의료인, 간호사등,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⁴⁾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⁵⁾에서는 기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로서 신설되는 범죄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4) 결격사유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5. (생략)

5) 개정안 부칙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당 범죄의 발생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범 시행 당시 정신 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 후
결격사유로 추가된 범죄를 행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기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⁶⁾를 참조하여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범 시행 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종전 규
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8

6) 결격사유가 추가된 경우 부칙 중 경과조치 관련 유사 입법례 비교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화장품법」

부칙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